

한국곡물제분공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우 140-87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9(한강로2가) 1302호
TEL 2077-1313~5/ FAX 2077-1316/ <http://www.kogmic.or.kr/>

수 신 : 전 회원업체 2019. 2. 18.

제 목 : 선거관리위원 조정 안내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2019년 2월 12일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등을
선출 하여 공지 하였으나 개선문제분 송효석 대표로부터 금번 조합
이사장 출마 의사와 함께 선거관리위원 사임을 통지해온바 정관 제4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등) ②항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첨부와 같이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자,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선거관리위원을 조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선거관리위원 명단
2. 정관 제43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끝.

한국곡물제분공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강택선

선거관리위원 명단

직 책	업 체 명	성 명	비 고
선거관리위원장	풍원제분	강택선	
선거관리자	경원제분산업사	송제원	
투표관리자	동양제분	김보성	
개표관리자	아세아식품	최종익	
선거관리위원	(주)동성제분	이강균	
선거관리위원	(주)신대도제분	이인자	

관 련 근 거

정관 제 43 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등) ① 본 조합의 임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회의 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이 경우 위원이 이사장 후보자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 선거규정으로 정한다.